

# 감사결과

## 1. 총괄

감사 결과 [표 1]과 같이 총 10건(처분 1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2건의 모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지적사항별 처분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1] 감사결과(처분·모범사례) 현황

(단위: 건,명)

처분합계		징계(명)	주의(명)	통보	권고	모범사례
건	인원(명)					
12	9	1(8)	1(1)	8	2	2

[표 2] 개별 처분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조치기관	지적사항	처분사항
1	사천해양경찰서	■ 경비함정 전용부두 보안 강화 필요	통보
2	사천해양경찰서	■ 무기·탄약 등 위탁보관 장소 변경 필요	권고
3	사천해양경찰서	■ 함정 탑재장비 매뉴얼 및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 미흡	통보
4	사천해양경찰서	■ 파출소 외근부력조끼 부착 장구류 정비 등 필요	통보
5	사천해양경찰서	■ 구조·구급 장비 관리 미흡	통보
6	사천해양경찰서	■ 피의자 호송계획 부적정 등 피의자 호송 업무 미흡	권고
7	사천해양경찰서	■ 퇴직자 공무원증 미 회수 등 공무원증 관리 미흡	통보
8	사천해양경찰서	■ 회계업무 처리 미흡	주의·통보
9	사천해양경찰서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초과근무시간 허위·대리입력	징계·통보
10	사천해양경찰서	■ 방제과 보유 장비·자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	통보

## 2. 주요 지적사항(요약): 총 10건

### □ 경비함정 전용부두 보안 강화 필요(통보)

- (판단기준) 사천해양경찰서는 경남항만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함정경량화 창고 등 육상부지 4,462㎡(약1,350평, 해양시설허가 매년 갱신)와 함정 계류시설을 무상 임대로 임시 사용 중에 있음
- (문 제 점) ① 전용부두는 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 출입구 주변 CCTV와 출입 승인 차량만 들어올 수 있는 차량 차단기(차량인식 시스템) 등 전용부두 자체 보안을 위한 시설물 등이 미설치 상태이고, ② 주 출입구 근처 여객선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나 육상과 함정을 잇는 도교에 개폐 출입문이 없고, 당직 근무자는 함정 내에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 외부 출입자 통제를 위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침입 등 출입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안대책 마련(통보)

### □ 무기·탄약 등 위탁보관 장소 변경 필요(권고)

- (판단기준) ① 사천해양경찰서는 개서(2022. 4월)이후 현재까지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중으로 청사 내 무기고 및 탄약고가 없는 상태임
- ②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무기·탄약 등을 보관하는 시설은 무기고, 탄약고, 간이무기고로 구분되고, 「무기·탄약 관리지침」에 따라 무기·탄약 등은 소속기관 무기·탄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탄약 보관시설이 없는 기관의 경우 보유 중인 무기·탄약 등을 타 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을 해야 함

- (문 제 점) 무기·탄약 보관시설이 없을 경우 타 기관에 위탁보관을 해야 하고, 간이무기고는 위탁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아님에도 38권총·K5 탄약 및 가스발사총 등을 과출소 간이무기고에 보관중인 사실이 확인됨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과출소 간이무기고에 보관 중인 무기·탄약을 규정에 맞게 인접 해양경찰서 등 타 기관에 위탁 조치(권고)

#### □ 함정 탑재장비 매뉴얼 및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통보)

- (판단기준) ①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함정장은 모든 탑재장비에 대하여 장비담당자 지정, 자체 매뉴얼을 제작<sup>1)</sup>해야 하고, 부서장(부장, 기관장)은 장비담당자를 지정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및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비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② 부서장은 함정의 성능 유지와 안전운항을 위해 탑재장비별 자체 매뉴얼에 기재된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함정 장비작동 확인 결과서’를 활용하여 장비담당자의 장비 작동 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문 제 점) ① 일부 탑재장비의 매뉴얼을 제작하지 않았거나, 장비 기능별 작동법에 대한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뉴얼과 함정 장비작동 확인 결과서 간 장비작동 방법 평가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미흡점이 확인됨 ② 분기별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 장비에 대한 장비

1)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8조(작동방법 숙지)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누락된 경비함정 탑재장비 매뉴얼 보완 및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 철저 등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을 위해 탑재 장비 작동 및 예방점검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이뤄지도록 대책 방안 마련(통보)

## □ 파출소 외근부력조끼 부착 장구류 정비 등 필요(통보)

- (판단기준)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9조와 「2025 파출소 운영지침」 CHAPTER V. 10. 복장 및 휴대장비 규정에 따라 장비를 휴대하거나,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에 비치하고, 순찰 시 근무복 위에 외근부력조끼를 착용해야 함
- (문 제 점) ① 외근부력조끼에 드로우 백을 부착하여 지참해야 하는데, 드로우 백에 연결된 줄이 최초 납품 상태 그대로 묶여져 있어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② 4단봉 등 진압장비는 필요시 휴대하거나 파출소장이 치안상황 등을 고려해 휴대 여부를 조정할 수 있어 일부 파출소는 4단봉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순찰 시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경찰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4단봉과 같은 최소한의 호신용 진압장비 휴대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 근무자의 개인별 지참 장비인 외근부력조끼 정비(드로우 백 등)와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호신용 진압장비의 휴대 방안 검토 등 외근부력조끼 부착 장구류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통보)

## □ 구조·구급 장비 관리 미흡(통보)

- (판단기준)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산소통(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 용기, 500L미만) 재검사기간은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소소생기는 정기적으로 산소용기 검사 실시 필요 ② 「해상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MPIS)」은 응급환자의 정보를 시스템 이용 기록·관리하고, 중증도를 알고리즘에 의해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실시간 집계·보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급 대응 시스템으로 재난안전단말기 및 분류 태그를 이용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여 이송과정을 앱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 등이 신설되는 등 법령 개정(2025.8.17.)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의무가 강화됨

○ (문 제 점) ① 산소소생기 이용 산소투여는 응급구조사(1·2급)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함정과 파출소에서는 산소소생기 사용 권한이 없어 기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x개 부서의 산소소생기 용기검사 기간 경과와 보관상태 불량이 확인됨 ②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MPIS) 전자태그 활용실적이 2024년 ~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응급환자 발생 xxx건 중 xx건에 그쳐 다소 저조함 ③ [가]파출소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월 1회 점검이 xx회 누락되었고, [a]합 등 총 5개 부서에서 패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됨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산소소생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점검 등

미흡 사항을 보완 조치하고,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MPIS) 전자태그 활용도 향상 방안 마련(통보)

□ **피의자 호송계획 부적정 등 피의자 호송 업무 미흡(권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8조에 따라 호송 관리 책임, 호송관 지정, 호송관 임무, 인수 관서, 호송 방법, 긴급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 호송 중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송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문 제 점) ① 사천해양경찰서는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포, 구속 사건 피의자 유치 시 인접 해양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구속 송치 등과 관련된 호송경로는 피의자가 입감되어 있는 인접 해양경찰서(출발지)를 기준으로 하여 호송경로가 정해져야 함에도 사천해양경찰서(출발지)를 기준으로 이동경로를 정하고 있음 ② 2025. 1. 15.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출석 관련하여 피의자를 XX해양경찰서에서 XX지방법원 XX지원까지 호송함에 있어 개정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피의자 호송 전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호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피의자를 호송하였음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 호송 시마다 호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실제 호송되는 경로(출발지, 도착지)를 기준으로 호송계획 상 호송경로 재검토 조치(권고)

□ **퇴직자 공무원증 미 회수 등 공무원증 관리 미흡(통보)**

- **(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무원증 관리강화 지침」,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등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된 공무원증은 폐기해야 함
- **(문 제 점)** ① 퇴직공무원 중 x명의 공무원증을 회수하지 않았음 ② 퇴직자 공무원증 xx매와 기재사항 변경 등 사유로 회수한 구 공무원증 xx매를 개서 (2022. 4월) 이후 폐기 없이 사무실 내 캐비닛에 보관 중인 상태임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퇴직자 공무원증 회수 및 폐기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통보**)

#### □ 회계업무 처리 미흡(**주의·통보**)

- **(판단기준)** ①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보조 공무원이 재무관의 최종 계약 가격 결정을 위한 시중 물가조사 결과인 기초 가격 조사자료(물가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는 것이 타당하고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2025. 2. 4.)에서는 수의계약(500만원 초과 시)의 경우에도 「물가조사복명서(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가격조사를 하도록 업무 지침을 하달하였음 ②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에서는 매년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기준”을 하달하여 관서운영경비 전반에 대해 상반기 집합 교육과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함

○ (문 제 점) ① 사업부서 담당자가 계약의뢰 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로만 물가조서복명서를 작성하여 총 xx건이 계약부서의 계약금액과 사업부서의 계획금액이 차액 발생 없이 동일하게 계약체결되었고, 총 x건의 계약이 시중 가격 조사 없이 체결됨 ② 경리계 주관 연 2회 관서운영경비 지도점검 실시에도 일부 부서는 매회 점검시마다 동일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지도점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③ 건당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관을 통한 지출과 계약절차를 통한 지출이 이뤄져야 함에도 총 x건이 규정에 맞지 않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소속직원의 회계 업무역량(관서운영경비, 계약 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통보), 관서운영경비 500만원 초과 집행 관련자 1명(주의)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초과근무시간 허위·대리입력(징계·통보)**

○ (판단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사천해양경찰서의 x개 부서 총 x명의 초과근무 허위 입력, 대리 입력

및 타인 매식비 사용 등 초과근무와 관련된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됨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초과근무 부정수령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관리강화 대책 마련, 초과근무 부정수령액에 대한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대리입력자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관리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초과근무 명령금지 6개월, 가산징수 5배),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자료에 활용(통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대상자 8명 징계요구(경징계)

#### □ **방제과 보유 장비·자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통보)**

- **(판단근거)** ① 유(油)처리제는 온도변화 등에 따른 성능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보관상태가 유지(-15℃~30℃)되어야 하고, 해경청 방제기획과에서는 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주관으로 매년 3월(4주간) 유처리제 보관상태 등을 점검한 후 필요시 교체 또는 성능분석 등을 하도록 지침을 하달함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MSDS 대상 물질에 해당되는지 제품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관리요령 등을 근로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와 관련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① 현재 보유중인 유(油)처리제는 총 x,xxxℓ으로 일부는 녹이 슬어 보관기능을 상실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2025년 3월이후 보관상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음 ② MSDS 해당 여부 확인을 통한 관리요령 게시 및 교

육이 이뤄지지 않았음 ③ 그 외, 방제창고 내에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가 다른 자재들과 구분 없이 보관중으로 창고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방제창고 x개 동의 소화기 x대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음

- (조치사항) 사천해양경찰서장은 방제창고 내 보관 중인 방제 장비·자재 관리 미흡 사항 보완 등 필요한 조치방안 마련(통보)